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추진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추진되며,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환자 및 병동 운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기준을 제시한다. 3차 상대까지 개편(임원료)과 연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보급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인 입원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경영진 및 제공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용 문화에 대한 안내·홍보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대책'을 계속 이행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통해 야간전담간호사 등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의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도록 종합계획에 명시했다. 지난 201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일반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한 바 있다.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배출된 신규간호사의 해당 지역 내 근무, 기존 근무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Quota) 설정 등 지역단위 적정인력 배치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의료취약지

역, 군지역 등 대상지역 및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등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방문진료서비스= 거동불편환자 등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간호사, 의사, 약사,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방문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팀= 영유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자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중증 소아환자는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안전= 환자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 격리실·중환자실 격리료 등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한다.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을 개선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2023년 75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4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산사 역할 중 대상자 정의 정비

의료기관 보안장비 설치·보안인력 배치해야

의료인 폭행죄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

조산사가 보건과 양호지도를 해야 할 대상자의 정의 중 '임부·해산부·산욕부'를 '임산부'로 정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산사 및 조산원 정의 정비= 현행 의료법에서는 조산사의 임무를 조산(助産)과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로 명시하

고 있다. (제2조제2항제4호)

또한 조산원은 조산사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조제2항제2호)

이 두 조항 중 임부·해산부·산욕부를 '임산부'로 정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27조제5항)

△감염관리 준수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첫째,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제36조제10호)

둘째,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제11호)

△병원감염 예방 교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47조제2항)

△의료인 폭행죄 벌칙= 의료인 등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제87조제1항)

정규규 기자 kschung@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비율 증가 추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8년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2019년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 공공부문 12개 분야 모두 관리자급 여성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단(6.5%→6.7%), 본부 과장급(14.8%→17.5%), 지방 과장급(13.3%→15.0%), 공공기관 임원(11.8%→17.9%), 공공기관 관리자(18.8%→22.8%), 지방공기업 관리자(4.9%→6.9%), 국립대 교수(15.8%→16.6%), 교장·교감(40.6%→42.7%), 군인 간부(5.5%→6.2%), 일반경찰(10.9%→11.7%),

해양경찰(11.3%→12.0%), 정부 위원회(40.2%→41.9%).

올해는 기존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독려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고위공무원이 없는 중앙부처에는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할 것을 독려한다.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확대한다.

국립대 교수의 성별 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군인·경찰 신규 채용을 늘려나간다.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할 계획이다.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가 증진되도록 정부혁신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자문단 운

강원도 산불피해 회원에 위로금 지급 "강원도간호사회로 연락주세요"

대한간호협회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의 주소지에 거주하며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회원입니다.

피해사실이 있는 회원은 강원도간호사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033)263-6417, 6419.

영, 성평등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는 조직 내

양성과 민주성·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의 경제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감대를 갖고 자율적으로 조직 내 성별균형을 확보해 나가려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cc@

"135년 역사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할 능력 있는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초 JCI 인증



국가고객 만족도 1위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글로벌 경영대상



【세브란스병원(신촌)】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규 간호사(기졸업자) 모집

1. 모집내용

구분	연세대학교 의료원[세브란스병원(신촌)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통합 추가채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격 : 간호학과 기졸업자(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제2외국어 포함)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취업보호대상자(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자격사항에 필히 기재 남자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군면제자
채용인원	000명
온라인 입사지원 (Homepage)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yuhs.or.kr) 접속 채용정보 게시판의 "2019년도 신규간호사 추가채용 모집" 선택 입사지원서 작성(지원 시 희망근무지 선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근무지 : 1. 신촌세브란스 / 2. 강남세브란스 / 3. 모두 가능 (최종 합격 후 배치 시, 희망근무지 우선 고려 예정)
접수기간	2019년 4월 10일(수) ~ 4월 29일(월) 24:00까지
구비서류 (면접시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전학내 성적증명서 1부 (학점/석차(누적 평균값) 입력 필수)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군 경력사항 기재 필수) 1부 기타 관련 자격증, 어학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1부
주소 및 문의처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료원 종합관 5층 인사팀 ☎ 02-2228-1286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1차면접전형 - 2차면접전형 - 신체검사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9년 5월 둘째주 예정

4. 기타

가. 합격자 발표 및 각 전형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yuhs.or.kr)에 게시됩니다.
나. 전형방법 및 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